

서울특별시 사회서비스원 출연 동의안

의안 번호	2667
----------	------

제출년월일 : 2021년 8월 11일

제출자 : 서울특별시장

1. 제안이유

- 가. 서울시에서는 사회서비스 공공성 강화, 종사자 처우 개선, 사회서비스 품질 향상 등을 위한 '서울시 사회서비스원'을 설립하여 운영하고 있음
- 나. 이에 '서울시 사회서비스원'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2022 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세출예산에 출연금을 반영하고자 「지방재정법」 제18조 제3항에 의거 '서울시 사회서비스원' 출연 여부에 대하여 사전 동의를 얻으려는 것임

2. 주요내용

가. 출연 개요

- 대상기관 : 서울특별시 사회서비스원
 - 소재지 : 서울시 마포구 마포대로 89 포스트 타워 12층
 - 규모 : 613.59 m^2
 - 위치도



- 소속기관 : 종합재가센터 12개소, 데이케어센터 2개소,
국공립어린이집 7개소('21.8월기준)

- 종합재가센터(12개소)

연번	기관명(구분)	소재지	개소일
1	성동종합재가센터(간호특화형)	성동구 아차산로33 2층	'19. 7.23.
2	은평종합재가센터(기본형)	은평구 진흥로77 3층	'19. 8.28.
3	강서종합재가센터(기본형)	강서구 공항대로325 3층	'19. 9.18.
4	노원종합재가센터(확대형)	노원구 한글비석로432 3층	'19.10.23.
5	마포종합재가센터(통원형)	마포구 마포대로11길44-81 지하1,지상2층	'20. 1.17.
6	송파종합재가센터(기본형)	송파구 위례성대로 18(방이동), 1305호	'20. 9.28.
7	영등포종합재가센터(기본형)	영등포구 선유로 130(양평동), 203호, 204호	'20. 9.28.
8	양천종합재가센터(기본형)	양천구 목동로 177(신정동), 8층	'20. 9.28.
9	도봉종합재가센터(기본형)	도봉구 도봉로136길7(창동), 202호	'20. 11.18.
10	중랑종합재가센터(기본형)	중랑구 중랑역로 62(중화동), 3층	'20. 11.30.
11	강동종합재가센터(기본형)	강동구 양재대로 1410(둔촌동), 6층	'20. 12.14.
12	서대문종합재가센터(기본형)	서대문구 연희로 142(연희동), 2층	'20. 12.14.

- 데이케어센터(2개소)

연번	기관명(구분)	소재지	개소일
1	마포 초록숲 데이케어센터	마포구 마포대로 11길44-81 지하1층	'20. 9. 9.
2	강서 든든 데이케어센터	강서구 공항대로2가길 5 2~3층	'20. 11. 2.

- 국공립어린이집(7개소)

연번	기관명(구분)	소재지	개소일
1	노원든든 어린이집	노원구 초안산로2라길	'20.3.2.
2	서대문든든 어린이집	서대문구 거북골로100	'20.5.1.
3	중랑든든(새우개하나) 어린이집	중랑구 용마산로 139다길17	'20.7.1.
4	은평든든(응암행복) 어린이집	은평구 은평로220	'20.7.1.
5	영등포든든 어린이집	영등포구 대림로35 가길 9	'20.9.1.
6	강동든든 어린이집	강동구 아리수로93가길 110	'20.9.21.
7	송파든든 어린이집	송파구 위례서이로25	'21.3.1.

○ 관련법령

- 법령 : 지방자치단체 출자·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0조
- 조례 : 서울특별시 사회서비스원 설립 및 운영지원 등에 관한 조례

나. 주요사업

-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사회복지시설의 수탁 운영
- 사회복지서비스 관련 법령에 따른 각종 서비스 등의 제공
- 사회복지서비스원이 운영하는 시설 및 제공서비스와 관련된 사회복지서비스의 질 제고 관련 연구·개발
- 사회복지서비스원에 종사하는 사람의 처우를 개선하고, 고용의 안정성을 높이기 위한 사업
- 그 밖에 사회복지서비스 공공성 제고 등의 책임을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

다. 총 소요예산(안) : 24,580,792천원

라. 산출근거

- 인 건 비 : 13,601,418천원(본부 및 소속기관)
- 사 업 비 : 10,979,374천원(사무운영비, 정책사업비, 연구개발비 등)

마. 출연의 필요성

- 사회복지서비스 종사자 직접 고용, 서비스 직접 제공 및 관리 등의 기능 수행을 위해 서울시 사회복지서비스원 출연금 필요
 - 사회복지서비스원의 직접 사회복지시설 운영 및 서비스 제공으로 품질 관리 등을 통한 공공성 강화
 - 사회복지서비스원 종사자 직접 고용 등을 통한 공공 일자리 창출, 신분안정 및 처우개선 도모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지방재정법

제18조(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)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자를 할 수 있다.
 ②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와 제17조 제2항의 공공기관에 대하여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연을 할 수 있다.
 ③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.

나. 예산조치 : 2022년도 예산 편성

다. 합 의 : 해당사항 없음

※ 작성자 : 복지정책과 사회복지팀 석민영 (☎ 2133-7752)